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조례안 개요

1. 회부경위

【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863) 】

가. 발 의 자 : 오현정 의원 외 23명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7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강동길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880) 】

가.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찬성자 11명)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7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863)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택재건축부담금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부담금 실제 수납액은 총 4,048억(일반회계 267억, 특별회계 3,781억)에 이릅니다.
- 부담금 징수 실적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있어 집행부와의 정보 비대칭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입, 세출에의 감시와 견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부담금별 운영 실적, 회계별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 운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2) 강동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880)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에 한하여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로서 '동의'를 얻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자출연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출자출연의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7조의2제2항 신설).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863)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의회의 세입·세출예산 감시·견제권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제출(안 제21조 신설)

- 개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고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부담금¹⁾에 대해 2021회계연도부터 그 부과와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부담금의 현황, 부담금운용제도의 변경·개선, 부과계획, 징수전망과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담금운용종합 계획서’를 작성해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법 제6조의2)²⁾.

- 또한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4조 단서)³⁾.

○ 서울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수도권인자 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2018년 결산 4,325억원)⁴⁾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규모와 사용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움.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서울시 부담금의 종류는 ① 학교용지부담금, ② 수도권인자부담금, ③ 하수도원인자부담금, ④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⑥ 혼잡통행료, ⑦ 교통개선분담금, ⑧ 교통유발부담금, ⑨ 과밀부담금, ⑩ 자치단체간부담금, ⑪ 재건축부담금 등 11개이며, 2018년도 결산결과 부담금 징수액은 총 4,325억원(일반회계 267억, 특별회계 3,519억원, 기금 539억원)임.

- 이는 예산안 제출시 포함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부담금 관련 자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되어 있는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 수준과 사용계획 등을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는 재정운영 전반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특정 서류의 제출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의 우려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전체 현황 파악 외에는 필요성이 낮아, 조례보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그러나, 부담금은 시민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제약하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담금 전체 규모와 사용계획 등 예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제출을 2021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 역시 확보될 수 있어 입법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강동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880)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이외에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출자·출연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 제출시 포함해야할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의회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개별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 제7조의2 신설)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으로 인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제18조)⁵⁾.

5)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또한 출연할 수 있는 경우를 ►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조례에 정해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제17조, 제18조).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가 직접 설립한 출연기관 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출자·출연을 하고 있음.

〈 개별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대상기관	근거법령	출연요구서 제출기한	출연금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매년 10월 31일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⁶⁾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없음	없음
3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매년 8월 31일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4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법 ⁷⁾	없음	없음
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매년 12월 31일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지정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함.

7) 「방송법」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서울시는 성북구,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20%를 부담(서울 20%, 성북 20%, 방통위 60%)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이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출자·출연 동의안의 첨부서류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⁸⁾.
- 이는 개별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방자치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의회의 관리·감독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동의절차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담당조사관	연락처
최 범 준	02) 2180-8058

8)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1]

〈 서울시 부담금 현황 〉

연번	부담금명	주관	부과 / 징수	위임	근거	목적	
1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부	서울시	자치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 2,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의 재원 마련	
2	원인자 부담금 (수도법)	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도권 손괴자 부담금	서울시	서울시	수도 사업소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원활한 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3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환경부	서울시, 자치구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당해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또는 개축을 위한 재원확보	
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5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시	서울시	-	「도로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시행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	
6	혼잡통행료	국토교통부	서울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도심 승용차 진입억제 및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서울의 대기질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으로 활용	
7	교통개선 분담금	국토교통부	서울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교통문제를 직접 유발한 원인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야기된 도시 교통난 문제를 해소함	
8	교통유발 부담금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유발의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 및 대중교통개선사업 재원 확보	
9	과밀부담금	국토교통부	서울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수도권의 과밀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낙후지역 개발 사업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및 도로·공원 등 도시개발 재정비축진 사업의 재원확보	
10	재건축부담금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 처리지침(고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1	자치단체간 부담금				협약에 따라 부과·징수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등 9개	
-	공공시설수익자 부담금(폐지)	서울시	서울시	-	「지방자치법」 제138조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참고자료2]

< 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안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1-8. 지방세지출현황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 7. 성인지 예산서
- 8. 성과계획서
-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 10. 명시이월 명세서
-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 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예산안의 편성)

-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2. 명시이월내역서
3.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4. 지방채내역서
5. 시유재산내역서
6. 채무부담행위내역서
7. 계속비 사업내역서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중기투자·재정계획서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